



장애인유권자 선거참여방법을 알아봅시다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NATIONAL ELECTION COMMISSION



contents

1. 투표를 하는 이유
2. 선거의 원칙
3. 투표하기 전 알아야 할 것
4. 투표하는 방법
5. 투표 시 이용할 수 있는 편의



강의안 소개

- + 본 교육자료 및 강의안은 장애인의 선거참여교육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- + 본 강의안은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시의 강의요령, **교육 준비 시의 참고사항**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+ 강의실 환경 및 저시력 등으로 화면 집중이 어려울 경우 교육자료를 출력하여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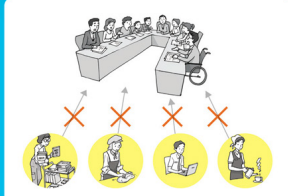
장애인 대상 교육 시 주의사항

- + 장애인을 지칭할 때는 장애우가 아닌 “장애인”이란 말을 사용합니다.
- +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할 때는 “비장애인”이란 말을 사용합니다.
- +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효과적인 전달방법이 상이하므로, 교육 실시 전 수강자의 유형 및 의사소통방법에 대해 사전에 파악합니다.
예)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자료보다는 음성자료를 활용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사 섭외 및 그림자료 활용발달장애인의 경우 쉬운 설명과 그림자료 활용
- + 선거에 대해 낯설어하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설명합니다. 또한 필요할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+ 강의 도중 질문을 할 경우 발음이 불명확하고 문장구사력이 미숙하더라도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줍니다.
- + 기능 및 인지수준이 낮다고 해서 반말을 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“연령에 맞는 존칭어”를 사용해야 합니다.

01 투표를 하는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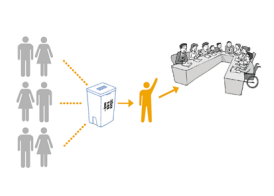


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. 국민은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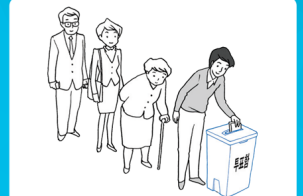


하지만 모든 국민이 나라의 일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.

01 투표를 하는 이유



그래서 국민들은 대표를 뽑아서 나라의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.



국민의 대표는 국민이 투표로 뽑습니다.

강의요령

◆ 민주주의의 뜻을 간략히 설명합니다.

※ 민주주의의 사전적 정의 :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.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. 기본적 인권, 자유권, 평등권, 다수결의 원리,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.
(『표준국어대사전』, 국립국어원)

◆ 우리 모두가 나라의 일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합니다.

※ 시간적·공간적 제약, 다양한 가치의 충돌 등
예)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요?

◆ 현재 우리가 정치체제로 채택한 ‘대의민주주의’를 설명합니다.

※ 반드시 ‘대의민주주의’라는 용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.
예) 대표를 뽑아서 우리의 생각, 의견을 대표해 나랏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.

배경지식

◆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

-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, 상충되는 가치를 가진 구성원 사이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치공유를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 따라서 서로 양해할 수 있을 만큼의 절충점을 찾아 제도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.
- 현대사회에서는 복잡·다양성으로 인해 구성원이 직접 가치를 결정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없어, 보편적으로 대의체를 통해 이를 대신하게 합니다.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체를 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하며, 이 과정의 핵심이 선거입니다.
(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자료 『선거로 본 한국 민주주의』 204~207쪽)

01
투표를 하는 이유

대통령

국회의원

지방자치단체장(시장, 도지사, 군수 등)
지방의원(시·도의원, 군·구의원)

교육감

강의요령

◆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사람(공직)에 대해 설명합니다.

예)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, 국회의사당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,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인 시장,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감 등

배경지식

◆ 공직선거의 종류 및 임기

선거명	임기	역대 선거(실시연도)	비고
대통령선거	5년	제19대 대통령선거('17)	
국회의원선거	4년	제20대 국회의원선거('16)	
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	4년	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('18)	

02 선거의 원칙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민주주의 선거의 4가지 원칙

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. (보통선거)

누구나 1표씩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. (평등선거)

나의 투표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안됩니다. 내가 직접 합니다. (직접선거)

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,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. (비밀선거)

02 선거의 원칙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- ☑ 선거의 4대원칙은 (보통선거, 평등선거, 직접선거, 비밀선거)를 말합니다.
- ☑ 보통선거란, (만 18세 이상) 국민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- ☑ (평등선거)란, 누구나 1표씩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이지요.
- ☑ 직접선거란,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안 되며, (직접) 하는 것입니다.
- ☑ (비밀선거)란,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.

강의요령

- ◆ 선거의 4원칙을 설명합니다(시나리오 참고).
 - ※ 4원칙의 '명칭'을 꼭 외우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
- ◆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빈 칸으로 만들어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시나리오(예시)

우리의 대표를 뽑을 때는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.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워볼게요.

만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. 이걸 **보통선거**라고 해요.

▶ 20세 이상인 청각장애인(예시)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, 없을까요?

누구나 한 선거에 한 번씩만 투표할 수 있어요. 이걸 **평등선거**라고 해요.

▶ 아주 힘이 센 친구(또는 돈이 많은 친구 등)는 투표를 두 번 할 수 있을까요?

다른 사람이 대신하지 않고, 꼭 내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해요. 이걸 **직접선거**라고 해요.

▶ 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투표하러 못 갔을 때, 부모님(또는 기타 인물)이 대신 투표해도 되나요?

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돼요. 이걸 **비밀선거**라고 해요.

▶ 누군가 나에게 “너 누구 찍었니?”라고 물어보면,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?

배경지식

◆ 보통선거

- 사회적 신분, 교육, 재산, 인종, 신앙, 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, 제한선거에 반대되는 말입니다.
-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보통선거를 채택하였습니다.

◆ 평등선거

-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,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
-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원칙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보통선거의 원칙과 같으나, 선거권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투표가치의 평등을 주로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보통선거의 원칙과 구별됩니다.

◆ 직접선거

- 직접선거란 선거인이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으로서 간접선거에 대비됩니다.
- 현대에서는 정당국가화 경향에 따라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과정을 통하여 후보자가 결정되지만, 최종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국민의 직접적 의사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면 직접선거의 원칙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◆ 비밀선거

-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원칙으로서 공개투표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.
- 투표가 공개되었을 때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경우, 투표권의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
◆ 자유선거

- 자유선거란 선거인이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강제선거에 대비됩니다.
- 자유선거의 원칙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내재적으로 당연히 요청되는 법원리로 보아야 합니다.

<출처 : 선거법규포털>

03 투표하기 전 알아야 할 것

3-1. 투표날짜, 투표소 위치 확인하기

투표 날짜는
달력이나 뉴스를
보면 알 수 있습니다.

투표소의 위치는
투표안내문이나
중앙선거관리위원회
홈페이지를
보면 알 수 있습니다.
www.nec.go.kr

시각장애인은
점자형 투표안내문을
받을 수 있습니다.
(음성CD, 음성인원 바코드 포함)

강의요령

◆ 투표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브리핑합니다.

◆ 투표날짜 및 투표소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를 소개합니다.

예) 뉴스, 투표안내문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

배경지식

◆ 공직선거의 선거일

-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
선거명	선거일	비고
대통령선거	임기만료일 7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	
국회의원선거	임기만료일 5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	
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	임기만료일 3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	

-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,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.

◆ 투표안내문

- 투표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.

- 선거인의 성명, 선거인명부 등재번호
- 투표소의 위치, 투표할 수 있는 시간, 투표하러 갈 때 지참물
- 사전투표안내
- 어르신·장애인 등 투표안내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2차원 바코드(QR코드)

- 투표안내문은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와 함께 매세대에 발송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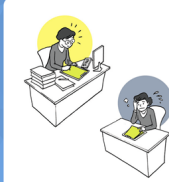
-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이 발송됩니다.

03

투표하기 전 알아야 할 것



3-2. 좋은 후보자를 고르는 방법



후보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.



후보자가 정직한지, 거짓말을 하는지 살펴봅니다.



후보자가 주민을 위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봅니다.

03

투표하기 전 알아야 할 것



3-3.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기



1. 선거벽보(포스터)

선거벽보(포스터)를 보면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.



2. 선거공보(책자)

선거공보(책자)를 보면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.
※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3. 후보자 토론

후보자 토론을 보면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.

강의요령

- ◆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할지 미리 정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.
- ◆ 좋은 후보자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.
 예) 예쁘고 잘생겼지만, 약속을 지키지 않는 후보자는 좋은 후보자일까요?
 주의) 연예인 등 실제 인물을 예시로 드는 것은 지양합니다.
- ◆ 후보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를 소개합니다.

배경지식

◆ 선거공보

- 작성권자 : 후보자(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추천정당을 말함)
- 종류 : 책자형(모든 선거), 전단형(대통령선거에 한함)
- 게재사항 : 후보자의 사진, 성명, 학력, 경력 등
※ 재산상황, 병역사항,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, 전과기록, 경력 등 인적사항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기재
- 대통령선거,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하되,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·점자 등을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(미제출시 과태료 부과).

◆ 선거벽보

- 작성권자 : 후보자(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)
- 게재사항 : 후보자의 사진, 성명, 기호, 소속정당명(무소속후보자는 “무소속”으로 표시), 경력,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·정책,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

◆ 대담·토론회

- 주 관
 -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*가 아닌 단체
 - 언론기관
 - 선거방송토론위원회
- 대 담 :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·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
- 토 론 :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·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·답변하는 것

* 국가·지방자치단체,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등

용어의 쉬운 설명

- 기호 : 후보자를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번호입니다.
- 경력 : 지금까지 해온 공부(학력), 일(직업)을 말합니다.
- 공약 : 후보자가 당선되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입니다.
- 전과기록 : 나쁜 행동을 해서 벌을 받으면 기록이 남습니다. 그것을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.
- 투표무원 :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,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03

투표하기 전 알아야 할 것

3-4. 신분증 챙기기



신분증을 가지고
투표소에 가야 합니다.



복사카드, 운전면허증, 여권도 됩니다.



도움이 필요한 사람은
도와줄 사람과 함께
투표하러 갈 수 있습니다.



중증장애인은
휠체어 탑승 차량과
활동보조인을
요청할 수 있습니다.
투표안내문에 나오는 선거관리위원회에
전화로 신청합니다.

03

투표하기 전 알아야 할 것

☑ 선거 관련 정보는 (선거벽보(포스터)),
(선거공보(책자)) 등이 있습니다.

☑ 후보자 관련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는
길거리에서는 (선거벽보(포스터)), 우편물로는
(선거공보(책자)), TV 등 매체를 통한 (후보자 토론) 등을
통해 알 수 있습니다.

강의요령

◆ 신분증을 챙기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.

예)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보여줘야,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어요.

◆ 무엇이 신분증에 해당하는지 질문을 통해 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

◆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차량 이용 가능 대상 및 신청방법을 설명합니다.

◆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빈 칸으로 만들어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배경지식

◆ 신분증

-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·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복지카드, 외국인등록증, 국가공인자격증,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학생증(사립학교 포함),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, 군부대가 기록 관리하는 병영생활 지도 기록부, 병적기록부, 복무기록 카드, 생활기록부 등
- ※ 사진촬영이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◆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

- 대 상 :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직접 (사전)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등
- 지원내용 :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및 활동보조인
- 이용방법 : 관할 구·시·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
- ※ 매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관리위원회 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04
투표하는 방법

1 선거일투표



투표 날짜를
미리 확인합니다.



내가 투표할 수 있는
투표소의 위치를
미리 확인합니다.



아침 6시부터
저녁 6시 사이에
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

강의요령

- ◆ 선거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합니다.
- ◆ 선거일에는 투표안내문에 적힌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

배경지식


◆ 투표구의 설치와 선거

- 투표구는 투표를 하기 위한 지역적 단위입니다.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, 지리, 교통 등을 고려하여 읍·면·동에 설치합니다.
- 투표소는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 곳입니다. 선거인명부의 대조·투표용지 교부·기표 등 투표가 이루어지는 장소로, 투표구마다 1개의 투표소를 설치합니다.
-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 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.
- 따라서 선거일에는 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

<출처 : 선거법규포털>

04 투표하는 방법

2 선거일 전에 먼저 하는 투표, 사전투표



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날짜에 먼저 하는 투표입니다.

사전투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할 수 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.

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.
회송용봉투 : 봉투에 적힌 주소로 보내지는 봉투입니다.

강의요령

- ◆ 선거일에 투표를 못하는 상황의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.
예) 출장, 여행 등
- ◆ 사전투표는 사전신청 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
예) 저는 서울에 살아요.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, 없을까요?
- ◆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

배경지식

◆ 통합선거인명부

-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(통합선거인명부)를 작성합니다.
-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은 전국 어디서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

◆ 사전투표의 절차

- 사전투표는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됩니다.
- 사전투표는 관내·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실시됩니다.

[관내·관외 구분 기준]

관내선거인 : 해당 구·시·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

관외선거인 : 해당 구·시·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


※ 하나의 구·시·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구역으로 봅니다.

용어의 쉬운 설명

- 투표지 : 기표용구로 찍은 투표용지입니다.
- 회송용봉투 : 봉투에 적힌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지는 봉투입니다.


04 투표하는 방법

3 내가 사는 곳에서 하는 투표, 거소투표




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갈 수 없을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는 투표입니다.

병원, 요양시설, 교도소에 거주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
거소투표는 미리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1. 거소투표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동주민센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2.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,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.



투표용지에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동그라미 표시합니다.

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 직원에게 줍니다.

강의요령

- ◆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.
예) 아파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상황,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등
- ◆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
- ◆ 투표용지에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.

배경지식

◆ 거소투표의 신고

-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
※ 제3호 :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.
-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합니다.
※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는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서로 보지 않습니다.



◆ 거소투표

-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.

◆ 기관·시설 안의 기표소

- 「공직선거법」 제14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·시설로서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·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.
※ 제2호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
- 거소투표인을 1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기관·시설은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
- 거소투표인을 10인 미만으로 수용하고 있더라도, 후보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.

용어의 쉬운 설명

- 거소 : 내가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, 병원, 요양시설,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곳을 말합니다.

04 투표하는 방법

4-1. 투표의 순서 및 방법



04 투표하는 방법

- ☑ (사전투표)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날짜에 먼저 하는 투표입니다.
- ☑ 거소투표를 주로 하는 곳은 병원, 요양시설, 교도소에 거주하거나 (장애인거주시설)에서 거주하는데 장애가 심하여 투표를 하러 가기 어려운 경우에 거소투표를 하고 싶다고 (신고)할 수 있습니다.
- ☑ 거소투표는 우편으로 (거소투표용지)가 배달됩니다.
- ☑ 투표용지에 (볼펜, 사인펜)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,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 직원에게 줍니다.

강의요령

- ◆ 투표순서별 주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.
- ◆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빈 칸으로 만들어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배경지식

- ◆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
 -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선거인의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.
 - 선거인명부의 “투표용지 수령인”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.
 - 투표용지를 수령합니다.
 -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투입합니다.

용어의 쉬운 설명

- 기표소 :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곳입니다.

04 투표하는 방법

4-2. 투표시 주의할 점

- ✗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.
 - ✗ 펜이나 도장으로 표시하면 무효가 됩니다.
- ✗ 투표용지에 투표도장을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.
 - ✗ 투표도장을 여러번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.
- ✗ 투표도장을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.
 - ✗ 투표도장을 네모칸 밖에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.

04 투표하는 방법

4-3. 투표시 주의할 점

- ✗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.
- ✗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.

04 투표 시 주의사항

- ☑ 투표할 때 반드시 (기표용구)로 찍어야 합니다. 펜이나 도장으로 표시하면 무효가 됩니다.
- ☑ 투표용지에 투표도장을 (여러번)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.
- ☑ 투표도장은 (네모칸) 밖에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.

강의요령

◆ 투표 시 주의사항 설명 시 확인질문을 통해 내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.

- 왜 한 번만 찍어야 할까요? (여러 명에게 기표한 사진을 가리키며) 이 사진을 보면, 누구에게 찍었는지 알 수 있나요?
- 투표소에서 왜 사진을 찍으면 안 될까요? (비밀선거의 원칙 상기)

◆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빈 칸으로 만들어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배경지식

◆ 유효투표 예시

- ①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
-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으로 더럽혀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로 표시한 후보가 명확한 것
- 한 후보자(기호·정당명·성명·기표)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
- 한 후보자(기호·정당명·성명·기표)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
-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

◆ 무효투표 예시

-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(거소투표 제외)
- 어느 란에도 ①표를 하지 않은 것(어느 후보자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)
-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
- 서로 다른 후보자(기호·정당명·성명·기표)란에 2개 이상의 ①표를 한 것
- ①표를 하지 않고 문자·물형을 기입하거나 서명·날인·무인한 것

용어의 쉬운 설명

- 기표용구 :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투표 전용 도장입니다.



05

투표 시 이용할 수 있는 편의



혼자서 투표도장 찍는 것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안내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기표보조: 장애인 선거관리규칙 제 10조 투표도장 찍기 등 기표에 필요한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.



밴드형 기표용구



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

손이 불편해서 투표도장 찍는 것이 어렵다면

- 손목에 고정하는 투표도장 (밴드형 기표용구)
- 입에 물고 사용하는 투표도장 (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)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확대경



전자투표 보조용구

눈이 잘 안 보인다면

- 전자투표보조용구
- 확대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05

투표 시 이용할 수 있는 편의



☑ 혼자서 투표도장 찍는 것이 어려울 경우, (가족)이나 (안내하는)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은 (비밀선거, 직접선거) 등의 선거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.

☑ 손이 불편하여 투표도장을 찍는 것이 어려운 경우, (밴드형 기표용구)와 (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)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☑ 눈이 잘 안 보이면, (확대경)과 (전자투표 보조용구)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강의요령

- ◆ 투표 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에 대해 설명하되, 강의 대상에 따라 일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◆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빈 칸으로 만들어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배경지식

◆ 기표보조

-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다음과 같이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.

- 허용대상 :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는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능력은 갖추었지만 시각 또는 손 등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

- ▷ 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
- ▷ 시지각 협응능력 저하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
- ▷ 그 밖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선거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

- 투표보조인원

- ▷ 선거인이 지명한 2인이 투표를 보조하되, 선거인의 가족이 보조하는 경우 1인도 기표소 입장 허용
- ▷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사무원 중에서 2인이 되도록 선정하여 투표보조

감사합니다!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NATIONAL ELECTION COMMISSION